■ 소득	득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	21호서식] <개정 :	202	5. 3. 21.	>							(1	0쪽 중 제1	쪽)
		1	신고구분			· 1	의처지	그	ΛI A	4人トさ	比人	174	(2)) 귀속	수연월	년	월
511.01		71 4	TI 0/11	소득	화급	- 4	원천 원천	江	YH X	<u> </u>	ች ት	八许			1-101		
매월	반	기 수	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권선성	3 T	제 =	q완i	3 C	· 18년	(3)	지급	6연월	년	월
													일골	<u></u> 알납부	브 여부	여, 부	
		법인망	병(상호)				대표:	자(성명	∄)				시업	자단위	과세 여	여, 부	
원천2 의무	싫수													부	-	⊶, ⊤	
-	74	사업지	다(주민)				11017	ᆉ	TI					전화변	번호		
		등특	자(주민) 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전자우편주소		@		
① £	김처.	지수 5	명세 및	납부세	앤											단위: 원)	
		0 1 0	J 11 ~	<u> </u>			OI Ŧ	- IX L	<u> </u>	التا						<u>년 (1)</u> 부세액	
						_	원 친 · -	선징	수 명	ᅦ			_	-			
	<u> </u> 수드	ᇎᆔᄼ	:득구분	코드	ᇩ	\	지 급			징수세	액		9 당월 2 환급사	조전	소득세 (기산세 포 함)	(11)	
		7/1	. – 1 ட	<u> </u>		, <i>=</i> T	마시 조심						왕급.	li액	, , , , , , , , , , , , , , , , , , ,	(1) 농어촌 특별서	<u>=</u>
					④ 인원	(5)	총지급액	⑥ 소	득세 등	① 놀C	거존 멸세	8 기산세			(기술체 포	두멸서	d .
			· 세액	A01											ш/		
	-		<u>' '' '</u> E퇴사	A02													
	-			A03													
	근론 소득		합계	A04													
	소득	연말	 분납신청	A05													
		0	르 <u>마르</u> 납부금액	A06													
			<u> </u>	A10													
			 금계 좌	A21													
	퇴직 소득		. 외	A22													
	오=		 감계	A20													
			 일징수	A25													
개	사업 소특			A26													
			 감계	A30										\neg			
인			금계 좌	A41													
거주 자•		종교인	매월징수	A43													
거주 자 • 비거 주자		소득	연말정산	A44													
수사	기탈 소득	가성	· 상자산	A49													
		인직	석용역	A59													
		コ	의	A42													
		가	감계	A40													
		연금	금계 좌	A48													
	열	공적연	금(매월)	A45													
	연금소나	연밀	발정산	A46													
		가	감계	A47													
		이자소	:득	A50													
		배당소	:득	A60													
	저축	등 해지 취	투징세액 등	A69													
	t	비거주자 잉	분소 극	A70													
법인	나	- 외 국 법	 이워처	A80													
		' - ' ' ' ' ' 신고(세'		A90										-+			
			7/											_			
		합계		A99										\perp			
ଅ ଞ	한급/	네액 3	조정												(단위	: 원)	
7	전월	미환급	급 세액으	l 계산			당월 발생	환급	급세액			(18)			20		
								(17)	그 채	의 환급	1 3	조정대상 한급세액		Ð .	차월이	② 환	٦.
12 전 미환	월	13 기 신청서	환급	(4) 차감전	[백 15 달) 환	일반	(1) 설탕자(1) 회사 등)			랙	- (A	환급세액 14)+15)+16)+	당월: 환급서	조정 l에게	차월이 월 환 급세액	신청액	-
미환	╁세액	신정서	액	(12-13)) 환	≓	회사 등)		급융 사동	합병 등	'	170)	근묘시	17/11	(18-19)		
								¥	N G								
	01-7-1	TI A -:-	-				-111-11 :	1 61 -:		5 -u -= · ·	<u> </u>		M 7 11	П	트 자시 ^		
위니	원전(H용음	실숙일부 충분칭	자는 소 설로하여	늘세법 시험 1 고 워처 ?	행령 _의 젬1	55至 17	제1항에 따라 알고 있는	나 워의 사실	내용 그대로	를 제출하 를 정확 :	焬	※ 해당란에	# T T N H	지플	등 작성 0: 합니다.	부	
척었	음을	확인합	니라. '^					. –	_ ,,	,	. "	부표(4~5	(쪽)	환급(7	쪽~9쪽)	승계명세(10	쪽)
									년	월	일						
									_	e	Z			세무다	내리인		
				신	고인				/		.1)		성 명 				
				_	_					병 또는 연		-	등록번호	-			
셓문	댎리인	<u> </u> 은 조서	전문자격	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	실하고 공정	성하게	작성하	였음을 :	확인	전호 	화번호	-1	. ===: · · =		
U=1	٦.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1 계쇄신고			
				세무대	리인				(서명	병 또는 연	<u> </u>		입처				
	세	무 시	네 장	귀히	ŀ								금종류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1.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및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2.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4.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5.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A59)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 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라. ⑤ <u>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u>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 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 바.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 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①)과 환급세액 조정(②)
-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기타·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 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⑥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을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2)

-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이 되도록 적습니다.
 -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징수세액(⑥ ~ ®)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⑯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습니다.
 -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②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 다)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⑩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4) ①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10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②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②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C46]의 합계를 적습니다.
-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 4. 반기별 신고 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 가. 인원
 -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 3) 일용근로(AO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 4)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 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1) 1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 2) 7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확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 해야 합니다).
-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 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5.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원천징	수이행상	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1	<u>-</u> 득지급		징수세액			납부/	네액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조정확급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놀어촌 특별세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12 1			(기간세)	727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ŀ	C08								
		비끄니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비과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	득	C20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딩	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이자 • 배당소득	작 .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u> </u>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	C29								
			기타 이자・배당소득	- -	C11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소득	C54								
			농업회시법인 배당소득	÷	C55								
		세금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	C56									
	이자	세금 특례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비		C57								
	봿닽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이자 • 배당소득	'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의	C94								
거 주 작			이자소득(9%)		C12								
차		세금 우대	배당소득(%)		C22								
개		우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 배당소득(%)	C95									
개 인													
\cup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		C13								
		일반 세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		C18								
		(14%) 분리 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	투사승권의	C58								
		과세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	득	C3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딩	소득	C96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과세	배당소득		C24								
		고배당	배당소득(9%)		C91								
		기업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소득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근로	파	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햊짉	소기	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햋짉 세역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등	장	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청년형	영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8								
			 해지추징 계		C50								
			MULQ 11		000			I		1			

						소	득지급	200	당수세액		ㅈ저 하	납부	<u>중 제3年)</u> 세액
		소득	자 소득구분		코드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조정환 급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기자	제한, 20%	C61								
		E	배당	제한, 20%	C6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비거	사업		인적용역	20%, 3%	C64								
기 주 자			사용료	제한, 20%	C65								
개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기 인	9.T	누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가상자산	10%, 20%	C77								
	714		그 외	20%	C68								
	근로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이자		14%	C71								
		투지	사신탁의 이익	14%	C72								
	내국	신	탁재산 분배	14%	C73								
	법인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법			이자	제한, 20%	C81								
민 원 천			배당	제한, 20%	C82								
천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외국 법인		인적용역	20%, 3%	C84								
	~ 국내 원천 소득		사용료	제한, 20%	C85								
	소득	<u></u>	가증권양도	10%, 20%	C86								
		투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가상자산	10%, 20%	C89								
		. '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계		C90								

원전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 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 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 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 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 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라에 적습니다
-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10. [C30]은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 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배당소득 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 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 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 15. [C4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18. [C48](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중 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19.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20.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0],[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 21.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22.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 23.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 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 24.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25.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26.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27.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 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번:	호 □□]-[]		원친	선징수	세 액 환·	급신청	서 부	丑	(5	<u></u> 단위: 원)
소득의	귀속	지급			소 득	① 결정	기닡	납부 원천징수	=세액	③ 차감	④ 분납	⑤ 조정	⑥ 환급
종류	연월	연월	코드	인 원	소 득 지급액	세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세액	금액	환급 세액	신청액
합계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②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 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류번호 [7		납 부	세 액	명 세	ᅵ서		(단위: 원)
1 원천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4 - 10		7-10	_		-1.01			징	수세액	
구분	ᅦᅦ	속연월 지		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② 지급	명세시	네 기닡	나무세약	백 현황						·		
소득의	소득의 서머 주민등 주()근무지		종	등(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구분	성민		- 타 턴호	③ 소득서 등	(4) 농어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합 계												
❸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0			
① 소득세 등 ③ 합계			.득세 등 합계		금액 - ①)		농어촌 열세 합계	④ 농어촌 특별세 합기			사 유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	호 🗆	□-□[전	월미환	글 세 액	조	정명세	서		(단위: 원)
환급 신	 신청 시	전월	릴미환급	급세안	 보 명세							
귀속연월	기속연월 지급연월		<u>겨</u> 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 세액		세목의 세액	③ 당월발 환급세액 (① - ②)	
2 환급세	액 조정	성 현	황									
				전	<u> </u> 월미환급서	액	⑦ 단원병	반새 (8) 조전대사	④ 다원 2	전	⑩ 차월이월
귀속연월	지급인	1월	④ 전 미환급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하그네		환급세액	환급세역		환급세액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3.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 4. [2. 환급세액 조정 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①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 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승계	환급세액 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 연월, ②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